

# 新年特輯

## 特許料 등 手數料 徵收規則 改

### 數手料 大幅 引上에 本會 즉각 引下

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의 80% 引上을 骨字로 한 商工部令 第729號(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의 徵收規則중 改正令)의 改正에 本會가 提出한 建議事項이 대 폭 反映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商工部令 第729號를 改正한 第732號가 公布되어 2月16일부터 施行됨으로서 밝혀졌 다.

特許廳이 本會의 建議事項을 대 폭적으로 規則改正에 反映한 것은 本會 建議事項이 곧 發明人 및 企業 그리고 辨理士들의 意見을 집약 한 것으로, 충분한 妥當性이 있었 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의 規則改正에 建議事項이 대폭적으로 反映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그 동안의 경위를 알아본다.

新年 첫날, 1月 4日 시무식을 마

친 工業所有權界는 구랍 31日 公告 된 商工部令 第729號의 1月 1日 소 급 시행으로 슬렁대고 있었다.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의 徵收規則중 改正令」에 의해 각종 手數料가 평균 80%나 大幅 引上되었기 때문이었다.

特許管理特別會計法의 制定(198. 6. 12. 31, 法律 第3889號)으로 特許 廳의 독립채산제 확립에 필요한 재

## 主要内容에 관한 本會建議와 改正規則의 比較

本會 建議 內容	改正 規則 內容	備 考
改正以前 舊基準料金の 50%以內 範圍에 서 引上	特許·實用新案·商標의 경우, 請求範圍項數나 指定商品數에 따 른 加算料 徵收料금에 限해 87. 12. 31 改正 料金基準 50~60%로 引下	
個人發明人·中小企業등에 대한 諸手數料 를 1/2로 減면		改正 草案에서는 發明品 展示會 에서 受賞한者에게 3年間 出願料 등의 減면규정을  삽입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보류
特許의 경우, 出願料·登錄料·심사청구 료 등의 基本料金を 加산료를 징수하지 않고  부과하는  最低  청구범위항수를 1개 항에서 5개 항으로  증가	基本項數를 5個項으로  합	
實用新案의 경우, 出願料·登錄料  심사청 구로 등의 請求範圍項數增加에 따른 加算 料 徵收 廢止	加算料를 徵收하지 않는 基本項 數를 5個項으로 하고 追加되는 項數에 따라 加算料 徵收	

# 正에 本會 建議事項 대폭 反映

## 改正建議... 改正規則 2月16日부터 施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登録料와 手數料의 徵收規則 改正으로 同 特許料·登録料 및 手數料가 전반적으로 2배 이상 하리라고는 예상하였으나 평균 80%의 2배는 發明人 및 企業 그리고 辨理士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급작스런 2배 2배에 發明人 및 企業 그리고 辨理士들의 반발이 줄을 잇자 特許廳은 上記 規則을 商

工部令 第730號(87. 1. 15)로 改正, 第9條(特許料 등 手數料 減額의 特例)를 新設하고 特許廳 告示 第88-1號에 의해 1月 15일부터 2月 15일까지 2배 2배로 徵收하기로 했다. 2배 2배에 따른 大會의 對應도 活潑했다. 本會는 1月 11日 2배 2배에 따른 會員懇談會를 開催, 그 結果에 따라 1月 15日 企業 및 個人發明人

들의 發明振興 次元에서 商工部令 第729號의 改正을 要求하는 建議를 하였다. 本會 建議를 접수한 特許廳은 이를 2배 2배로 수용, 改正案을 마련하여 商工部令 第732號로 公布하고 2月 16日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商工部令 第729號에 대한 本會 建議內容에 대한 反映內容과 새로 改正公布된 商工部令 第732號의 2배 2배를 소개한다. <編輯者 註>

商標·서어비스標 등의 出願料 및  등록료를 부과함에 있어 加算料를 徵收하지 않는 기본단위인 지정상품수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할 것	建議대로 반영	
聯合商標·연합서어비스 標 등의 登録料를 일반 상표나 서어비스표와 같이 200,000원에서 141,000원으로 인하할 것	建議대로 반영	
商標權·서어비스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料(180,000원)를 보통상표등록료(141,000원) 수준과 근접하게 인하.	指定商品이나 指定서어비스의 增加에 따른 加算料徵收 삭제	

## 상공부령 第732號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 개정령

### 1. 개정 이유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제정(1986. 12. 31, 법률 제

3889호)으로 특허청의 독립채산제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1987. 12. 31, 상공부령 제729호) 등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였는 바, 특허출원인들에게 동 요금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고 점진적 인상으로 경제적부담을 덜어주어 법적안정을 기하게 하고자 신설된 특허료의 가산료등을 일부 인하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가. 특허료와 실용신안등록료의 가산금을 인하고, 가산금 납부시의 가산이 되지 아니하는 기본청구 범위에 속하는 항수를 종전 1항에서 5항으로 조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 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와 동출원료 납부시 가산되는 부가료를 인하고 가산이 되지 아니하는 기본지정상품수를 종전 5개에서 10개로 조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료를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료와 동일하게 인하 조정함(안 제4조제2호).

라.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 갱신등록시 납부하게하던 부가료제도를 삭제함(안 제5조제5호).

마.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 청구시의 부가료를 인하고, 부가료 산정시 가산되지 아니하는 기본청구범위에 속하는 항수를 종전 1항에서 5항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①경제기획원과 합의되었음.

②서식에 관하여 총무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규조문대비표

## 상공부령 제732호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중 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특허료) 특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5,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56,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7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14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6년 내지 제20년	매년 28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2조(실용신안 등록료) 실용신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0,5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4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9,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매년 5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2,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 4 조 본문단서중 “5개”를 “10개”로 하고 “10,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매건 200,000원”을 “매건 141,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제1호 가목중 “매건 9,000원”을 “매건 10,0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매건 22,000원”을 “매건 30,000원”으로 하며, 동조제4호 가목중 “매건 9,000원”을 “매건 10,000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나목중 “매건 22,000원”을 “매건 30,000원”으로 하며, 동조제5호단서를 삭제한다.

제 6 조 제1호 라목 내지 사목의 각 단서중 “5개”를 각각 “10개”로 한다.

제 6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심사청구 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5,000원)씩을 가산한다.

제 6 조 제4호 및 제5호의 각 단서중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각각 “청구범위의 항이 5항”으로 “20,000원” 및 “10,000원”을 각각 “5,000원”으로 하고, 동조제5호 라목중 “매건 72,000원”을 “매건 36,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9호 가목중 “매건 9,000원”을 “매건 5,000원”으로 하고, 동조동호 나목중 “매건 20,000원”을 “매건 10,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11호중 “5개”를 “10개”로 하고,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 6 조 제15호중 “매건 20,000원”을 “매건 7,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19호 단서중 “200원씩”을 “100원씩”으로 한다.

제 6 조 제21호중 “공고(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를 “마이크로필름”으로 한다.

제 7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특허청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이 발명 또는 고안(의장고안을 포함한다)을 하여 다음 자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심사청구료·출원공고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호대상자에 한한다)

2. 재학생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 또는 학과의 장의 확인서(자급학교의 재학생에 한한다)

제 9 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이 규칙은 198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미 납부된 특허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특허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등록) 사정 또는 등록실결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종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 4 조 (상표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 사정 또는 등록실결등본이 발송된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료,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료는 종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심사청구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와 출원공고의 결정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료는 종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 6 조 (출원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포함) 출원중 출원료를 일부 또는 전부 납부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는 종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 7 조 (기타보정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보정명령이 발송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대한 보정료는 제6조12호에서 규정한 금액 및 종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 8 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	---	---	---

제 1 조(특허료) 특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 존속 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 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5,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 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 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56,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0,000원씩 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12,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40,000 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24,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0원 씩을 가산한 금액
제16년 내지 제20년	매년 44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0,000원씩 을 가산한 금액

제 1 조(특허료)

특허권 존속 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 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5항 5,000원
제4년 내지 제6년	5항 10,000원
제7년 내지 제9년	5항 15,000원
제10년 내지 제12년	5항 20,000원
제13년 내지 제15년	140,000원 5항 25,000원
제16년 내지 제20년	280,000원 5항 30,000원

제 2 조 (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실용신안권 존속기 간의 기산일로부터 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0,5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원씩 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 을 가산한 금액

제 2 조(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권 존속기 간의 기산일로부터 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5항 3,000원
제4년 내지 제6년	5항 6,000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41,000원에 청구범위의 량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5,000원씩 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50,000원에 청구범위의 량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 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가 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5항	9,000원
제10년	5항	12,000원

제 3 조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생략)

제 4 조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  
상표의 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상표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다음 각호의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지정서어  
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1. 생략
2. 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  
합 업무표장

매건 200,000원

3. 생략

제 5 조 (기타등록료) 특허·실용신안·의장·유사의  
장·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  
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  
장에 관한 기타의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유사의장권·상표권  
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비  
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의 이전등록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9,000원

나. (생략)

2. 실시권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

매건 22,000원

3. (생략)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9,000원

나. 상속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22,000원

5.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  
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  
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매건 180,000원

제 3 조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현행과 같음)

제 4 조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  
상표의 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10개

5,000원

1.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 5 조 (기타 등록료)

1.

가.

매건 10,000원

나. (현행과 같음)

2.

매건 30,000원

3. (현행과 같음)

4.

가.

매건 10,000원

나.

매건 30,000원

5.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6. ~9. (생략)

제 6 조 (수수료)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유사의장등록출원·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비스표, 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 등록출원 및 기타의 청구 또는 신청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원료

가. ~다. (생략)

라.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마. 연합상표·연합서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바. 상표권·서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매건 60,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사.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2. 심사청과료

특허출원

매건 56,000원

〈단서 삭제〉

6. ~9. (현행과 같음)

제 6 조 (수수료)

1.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10개

다.

10개

바.

10개

사.

10개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26,000원

다만, 최초출원서의 청구범위 및 보정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실용신안 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0,000원)씩을 가산하되, 항수의 계산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3. (생략)

4. 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가. ~카. (생략)

5. 항고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가. ~다. (생략)

라. 출원의 거절사정불복심판

매건 72,000원

다. ~타. (생략)

6. ~8. (생략)

9. 출원인 명의 변경신청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9,000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20,000원

10. (생략)

11. 지정상품등의 보정료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그 보정수를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수와 합산하여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기타보정료

특허법 제10조의2·제103조·제126조·제134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의장법제13조의2·제53조 및

다만, 심사청구 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5,000원)씩을 가산함.

3. (현행과 같음)

4.

5항  
5,000원  
5항  
5,000원

가. ~카. (현행과 같음)

5.

5항  
5,000원  
5항  
5,000원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매건 36,000원

다. ~타. (현행과 같음)

6. ~8. (현행과 같음)

9.

가.

매건 5,000원

나.

매건 10,000원

10. (현행과 같음)

10개

12. <삭제>



상표법 제14조의2·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  
매건 2,000원

- 13. ~14. (생략)
- 15. 법정기간, 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매건 20,000원
- 16. ~18. (생략)
- 19.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료 매  
건300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  
우에는 그 1건마다 200원씩을 가산한다.
- 21. 공보(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  
사신청료 매1면 100원
- 22. ~23. (생략)

제 7 조 (납부방법등) ①~⑨ (생략)

⑩특허청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교  
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이 발명  
또는 고안(의장고안을 포함한다)을 하여 특허법·실  
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심사청구료·출원공고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⑪ (생략)

제 8 조 (국제출원수수료)  
(생략)

제 9 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액의 특례) 이  
규칙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 13. ~14. (현행과 같음)
- 15.

매건 7,000원

- 16. ~18. (현행과 같음)
- 19.

100원

- 21. 마이크로필름

- 22. ~23. (현행과 같음)

제 7 조 (납부방법등) ①~⑨ (현행과 같음)

⑩

(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  
한다)

을 하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

-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보호대상자에 한한다)
- 2. 재학생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임을 증명하는 소  
속학교 또는 학과의 장의 확인서(각급학교의 재학  
생에 한한다)

⑪ (현행과 같음)

제 8 조 (국제출원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 9 조 <삭제>

李周基 特許法律事務所

辨理士 李 周 基

移轉日字: 1988. 1. 11  
移轉場所: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822-5  
(大建빌딩 405號)  
電 話: (代) (02) 557-2268  
(夜) (02) 567-5907  
팩시밀리: (02) 557-2079  
텔 렉 스: K28881

河文洙 特許法律事務所

辨理士 河 文 洙

開業日時: 1988. 1. 26(火) 午後 3時부터  
場 所: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823-23  
(東洋빌딩 1층: 다우(적)벽돌건물)  
電 話: 568-5377, 5378  
FAX NO: 556-9353